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09,322,462	90,279,674
일반회계	2,581,797,855	77,453,936
특별회계	427,524,607	12,825,738
공기업특별회계	354,320,478	10,629,6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2,123,685	4,263,71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2,196,793	6,365,904
기타특별회계	73,204,129	2,196,124
교통사업 특별회계	28,248,444	847,4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17,207	54,51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54,849	10,645
대지보상 특별회계	400,000	12,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8,733,080	561,99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627,684	78,831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55,900	28,6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783,51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